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 10.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4. 10. 5

다. 상 정 일 자 : 2004. 10. 11

(제1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부과상 허 길 중

나. 제안사유

- 광주민주유공자가 5·18민주유공자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중소기업의 활성화
화를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감 범위를 확대하는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화순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 제2항)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 사
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에만 재산세 및 종토세를 경감하였던 것을 기업
의 활성화 및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협동화사업단지외에도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도록 완
화(안 제11조 제2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용태)

- 본 개정 조례안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 범위를 확대하고 현실에 맞
는 용어로 명칭을 변경하는 감면 조례안으로서
-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의 준칙안에 의거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행
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 의결”

7. 붙임 :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사”를 “5·18민주화운동 부상사”로 한다.

제11조 제2항중 “구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를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